



오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0. 8. 5. / (총 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박 은 정		044-202-1711
전략기획팀	담 당 자	한 연 수		044-202-171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팀 장	김 성 훈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박 현 수		044-200-2295
문화체 육관광부	과 장	정 원 상		044-203-2861
관광산업정책과	담 당 자	김 영 미		044-203-286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물놀이형 유원시설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 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 설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특성상 임시주거시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 대응 뿐만 아니라 방역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콘서트 등 대규모 공연이 개최됨에 따라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 방역 지침을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 한편, 정 본부장은 이번 달 18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이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미리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준비하되, 방역에 취약한 **영세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점검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 인천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방역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시 점검 등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찾아내고 해외공항의 수범사례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보완하도록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록 8.7일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하였으나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력 동참도 가능하여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복지부에게 전공의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1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개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물놀이형 유원시설 87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해당없음
  - 점검 결과 51개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 12건** 등 **총 130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일광용 의자 거리 두기 미이행 등 **방역 수칙 위반사례**는 **현장**에서 모두 시정조치하였다.
    - \* 방역수칙 위반사례 12건, 안전교육 등 의무사항 미준수 58건, 유기기구 결함 33건, 기타 시설 안전미흡 27건
    - 그 외 안전교육 등 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유기기구 결함 등 **안전관리 위반사례는** 현장 조치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격적인 무더위로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객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 '방역 상태 수시 점검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2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안전신고 현황 등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4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1,501개소, ▲공중화장실 1,927개소 등 35개 분야 총 9,443개소를 점검하였고,
    - 점검 결과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2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87개반, 259명)하여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 □ 한편 8월 4일(화) 신고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84건**이며, 지금까지 **총 2,089건**이 신고되어 1,637건(78.4%)를 처리하였다.
  - 해상케이블카 이용객 중 마스크 미착용자가 많다는 신고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을 금지토록 행정지도하고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 3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8월 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125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9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20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55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8.4)는 현장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해 산책이나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을 이용한 무단이탈자 3명을 적발하였고, 이 중 2명을 고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3개소 2,75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18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8월 4일) 입소 189명, 퇴소 220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 3. 여름휴가를 위한 코로나 예방 3행(行)·3(禁) 수칙
  -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 5.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6.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7.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9.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